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0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19. 5. 14.(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	한일용 의원 외 8명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한일용 의원 외 8명
- 제안일 : 2019. 5. 8.
- 회부일 : 2019. 5. 8. (의안번호 : 19 - 60)

2. 제안이유

-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·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용의의 정의(안 제2조)
-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 지원 (안 제3조)
-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(안 제4조)
- 보험가입(안 제5조)
-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및 유공단체 포상(안 제6조)

4. 관계법령

-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조 및 제54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한일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,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본 제정안은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·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바 “자연보호 조직”이란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마포구에서 자연 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.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구청장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함.
-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절차, 관리, 정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.
- 안 제5조에서는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함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최근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대기오염 등으로 더욱 심각해진 스모그나 미세먼지 등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과 주요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상위순위에 맑은 하늘, 깨끗한 공기 등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한편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○ 이번 제정조례안은 자연보호를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교육,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대비하기 위한 행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과의 저촉여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